

한계기업 현황과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정화영

목차

한계기업 추세와 현황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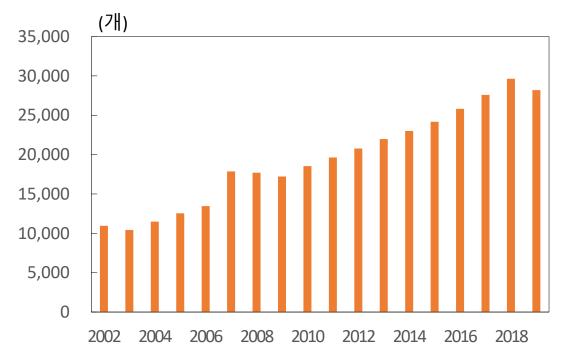
1 한계기업 추세와 현황

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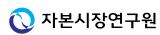
○ 분석대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상장법인) U (자산 500억 이상) U (매출 500억 이상) U (자산, 매출, 부채, 고용)
- > 2002년 ~2019년 12월 결산기업 (금융업 제외)

외감기업 수 추이



주: 금융회사 제외 자료: Fn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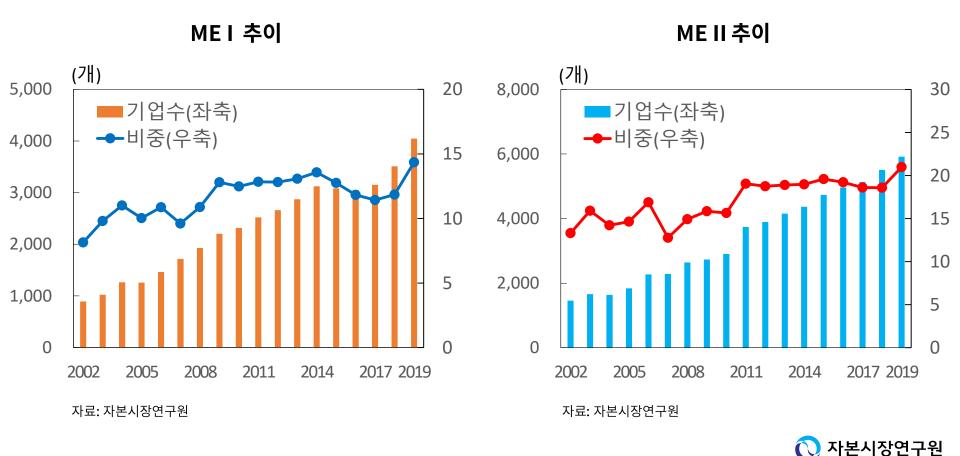
한계기업 지표

○ 한계기업 지표

- ightarrow MEI (주 지표): 이자보상배율 1 이하 또는 영업적자 3년 이상 연속
- > ME II (보조 지표): 5년 누적 이자보상배율 $\left[\frac{\sum_{i=0}^4 (\text{이자지급})_{t-i}}{\sum_{i=0}^4 (\text{영업이익})_{t-i}}\right]$ 1 이하 또는 영업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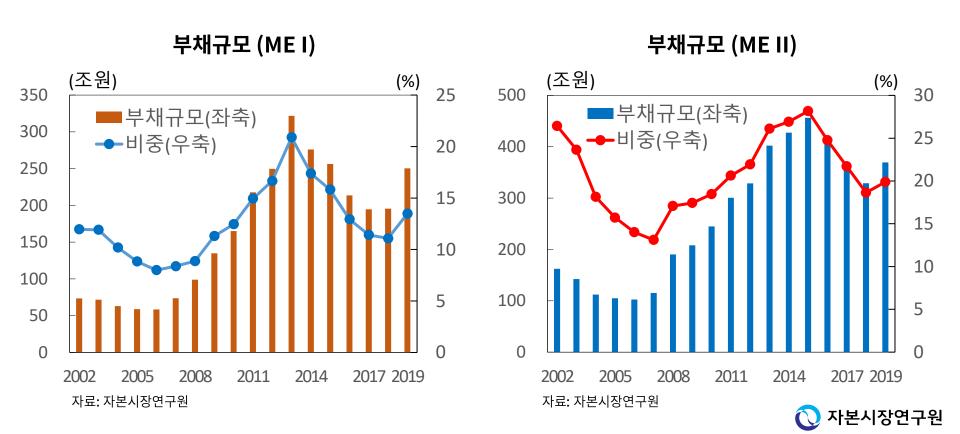
한계기업 수

- GFC 이후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한 후 13%(ME I) 내외 유지
 - > MEI수는 꾸준히 증가: 1,927('08) → 2,662('12) → 3,052('16) → 4,046('19)
 - > ME II 의 경우 2011년 이후 19% 내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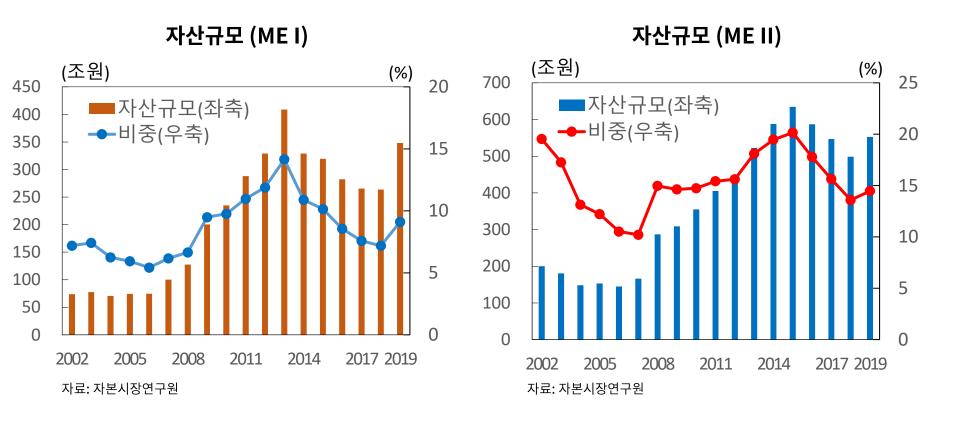
한계기업의 부채

- 한계기업의 부채규모는 GFC 이후 증가하다 13년 이후 하락
 - > 한계기업(MEI) 부채규모: 135조('09) → 322조('13) → 214조('16) → 250조('19)
 - > ME I의 부채는 외감기업 부채의 13.5% 를 차지
 - > ME II의 부채규모는 369조('19)로 ME I에 비하여 50% 가량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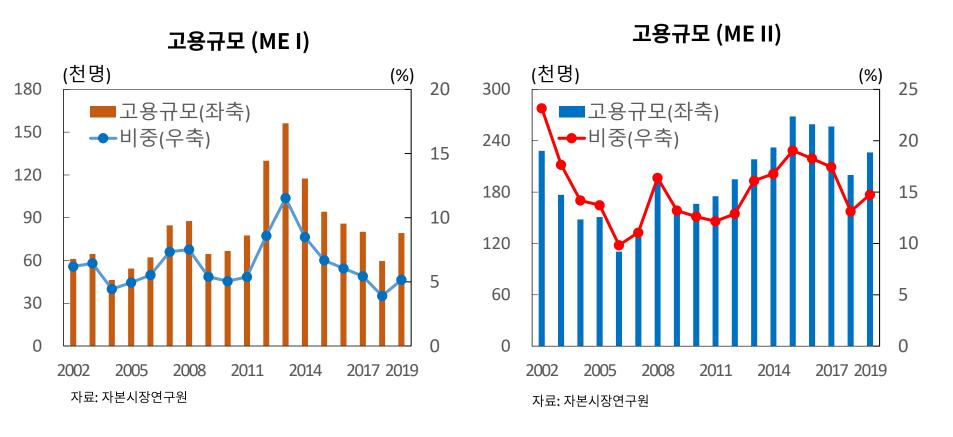
한계기업의 자산

- (한계기업 평균 자산 규모) < (외감기업 전체 평균 자산 규모)
 - > 2019년 ME I 자산 비중 9.12%, 기업 수 비중 1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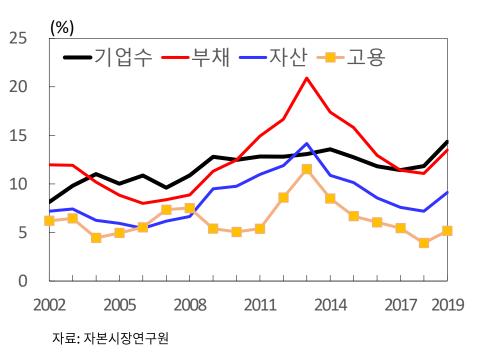
한계기업의 고용

○ 고용시장에서 한계기업(ME I)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이후 꾸준히 하락 > 한계기업의 고용 비중은 자산이나 부채에 비하여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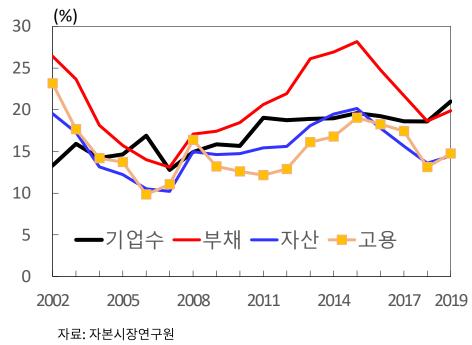


한계기업의 비중

지표별 한계기업의 비중: ME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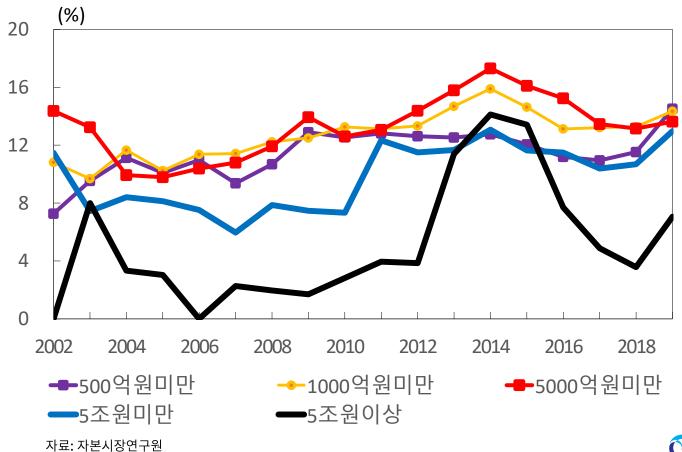
지표별 한계기업의 비중: ME II



자산 규모별 한계기업 비율

- 자산 500억~5,000억 구간에서 한계기업 비율이 높은 수준 유지
 - > 규모가 클수록 한계기업 비율이 낮은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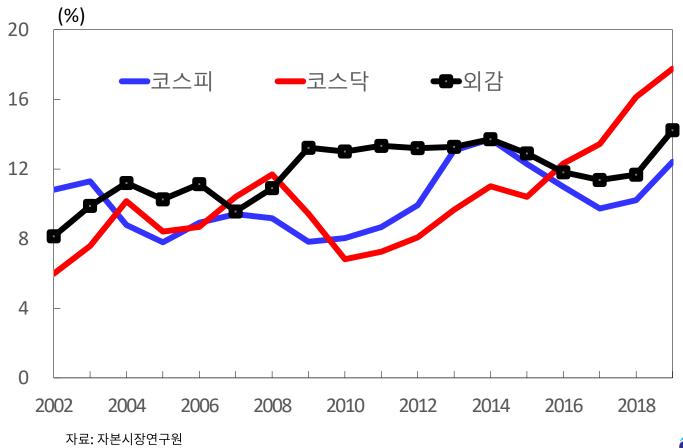
자산 규모별 ME I 비율



상장 /비상장 한계기업 비율

- 코스닥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 비율(17.8%, '19)로 높은 수준 기록
 - > GFC 이후 상장기업 한계기업화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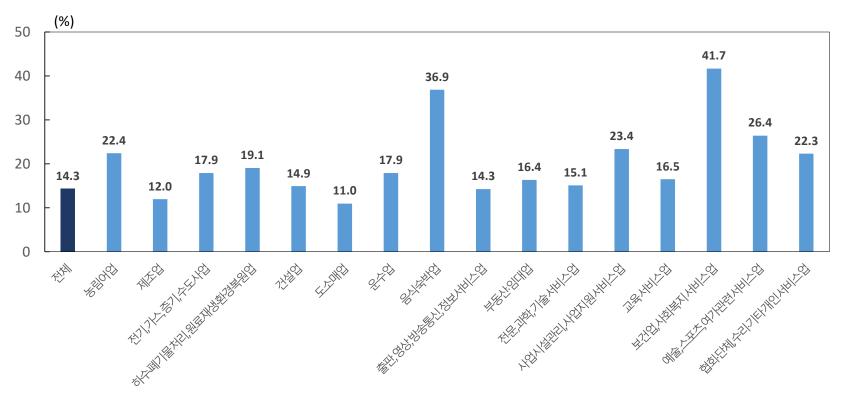
상장/비상장 기업 ME I 비율



산업별 한계기업 비율

- 음식숙박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영역에서 한계기업 비율이 높음
 - >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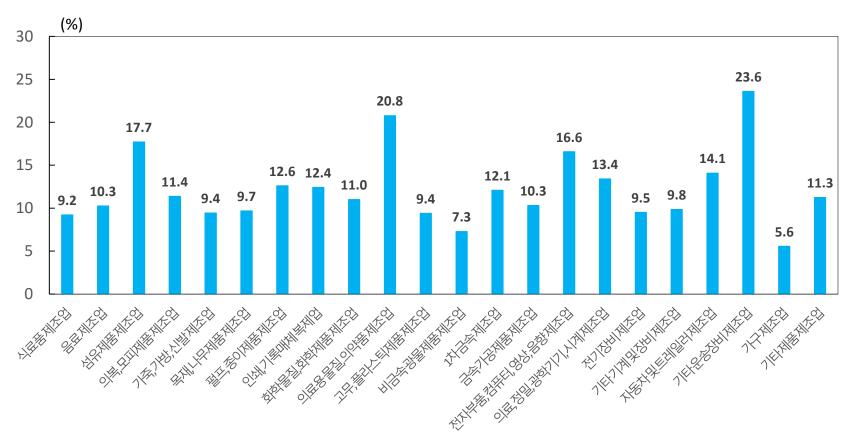
산업별 ME I 비율: 2019년



제조업 한계기업 비율

○ 운송장비(자동차 제외), 의약품, 섬유, 전자부품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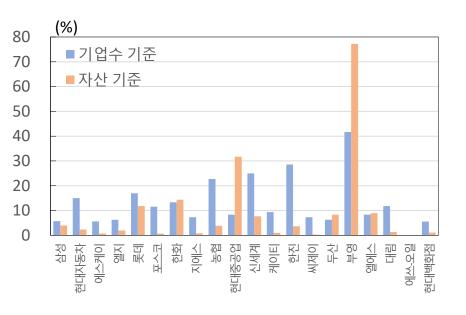
제조업 ME I 비율: 2019년



대규모 기업집단 한계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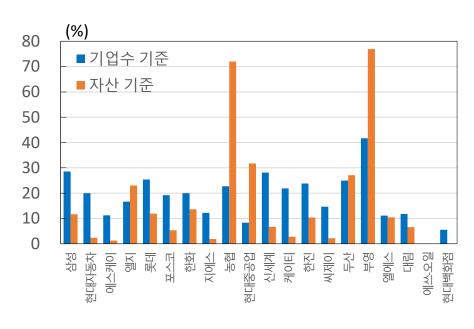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소규모기업의 한계기업화가 상당 수준 진전
 - > 일부 기업집단의 한계화는 심각한 수준

기업집단 ME I 비율: 기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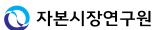


주: 2019년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집단 ME II 비율: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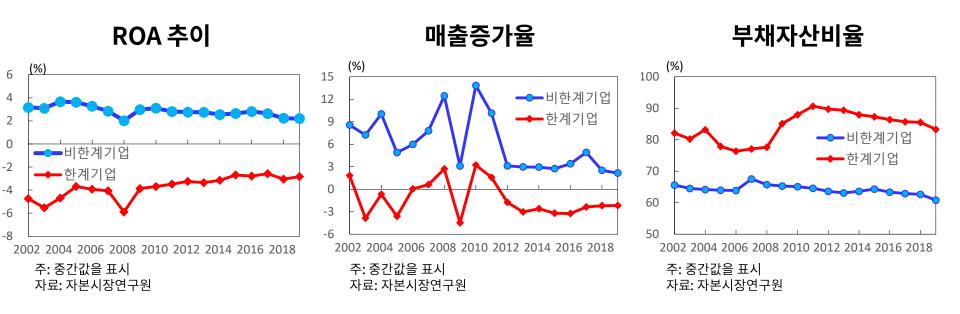


주: 2019년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한계기업의 주요 재무지표

- 한계기업(MEI)과 정상기업 간 수익성과 성장성 격차는 GFC 이후 다소 축소
 - › GFC이후 재무안정성 격차는 크게 확대



한계기업 전이행렬

- 한계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할 확률 최근 증가
 - 한계기업(MEI)이 다음 해에도 한계기업에 머무를 확률이 2002년 68%에서 2017년 75%로 다소 상승

전이행렬: ME I

전이행렬: ME II

2003년

2003년

		정상기업	한계기업	퇴출
2002년	정상기업	0.89	0.04	0.07
	한계기업	0.17	0.68	0.14

2002년

	정상기업	한계기업	퇴출
정상기업	0.86	0.06	0.08
한계기업	0.18	0.73	0.09

2018년

2018년

		정상기업	한계기업	퇴줄
2017년	정상기업	0.89	0.05	0.06
	하계기언	0 14	0.75	0 11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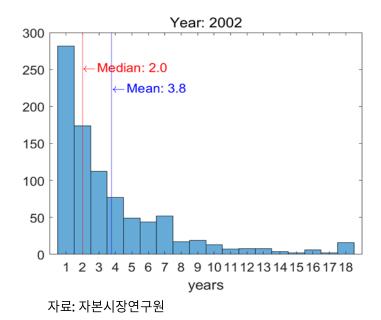
	정상기업	한계기업	퇴출
정상기업	0.88	0.06	0.07
한계기업	0.10	0.82	0.08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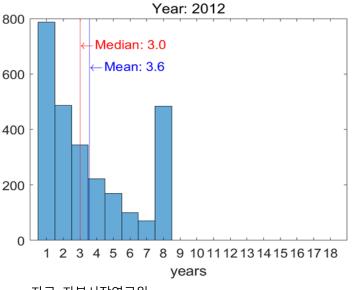
한계기업 상태의 Hysteresis

- 한계기업 상태는 상당한 hysteresis를 보이고 있음
 - > 2002년 한계기업(MEI) 상태에 진입한 기업이 한계기업을 벗어나는데(정상화 또는 퇴출) 소요된 평균 시간은 3.8년, 10년 넘게 한계기업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상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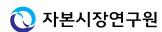
한계기업(ME I) 지속기간 분포: 2002년



한계기업(MEI) 지속기간 분포: 2012년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한계기업 지속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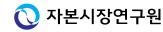
○ 한계기업 상태 지속 요인:

수익성(ROA) ↓ 성장성(매출증가율) ↓ 재무취약성(D/A) ↑ 자산규모 ↑ 상장 ↓ 기업집단소속 ↓ 제조업 ↓ 업력 ↓

한계기업 지속 요인: multinomial logit 분석

	종속변수:한계기업의 확률분포			
	$y_{i,t+3} = ME1$		$y_{i,t+3} = ME2$	
설명변수(x _{i,t})	b_1	b ₂	b_1	b ₂
상수항	0.28 ***	-0.25 **	0.39 ***	-0.05
ROA	-0.89 ***	-2.76 ***	-7.35 ***	-9.17 ***
매출액증가율	-0.25 ***	-0.47 ***	-0.38 ***	-0.79 ***
부채총자산비율	0.19 ***	0.74 ***	0.17 ***	0.76 ***
자산규모(500억원~5000억원)=1	0.24 ***	-0.69 ***	0.13 ***	-0.61 ***
자산규모(5000억원이상)=1	0.24 **	-0.71 ***	-0.11	-0.82 ***
상장기업=1	-0.27 ***	-3.38 ***	-0.20 ***	-3.57 ***
기업집단=1	-0.35 ***	-1.41 ***	-0.34 ***	-1.82 ***
제조업=1	-0.38 ***	0.04	0.00	0.13
건설업=1	0.19 **	0.30 ***	-0.01	0.28 **
서비스업=1	0.29 ***	0.10	0.27 ***	0.16
업력	-0.13 ***	-0.29 ***	0.06 ***	-0.30 ***
표본 수	27,300	27,300	48,729	48,729

주: 1) 2002~2019년 외부감사대상 12월 결산법인(금융업제외)을 대상으로 분석



²⁾ ROA, 매출액증가율, 부채총자산비율의 상위 및 하위 2.5%에 해당하는 표본을 제거하여 이상치를 제거

³⁾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4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한계기업의 영향

부가가치 -8.50% 총임금 -3.14% 설비투자 -2.87%

-6.75%

○ 한계기업의 존재는 동일산업 내 정상기업에 부정적 영향

산업 내 한계기업 10%p 증가 시 정상기업으로의 전이효과

총생산성(TFP) -6.75% 부가가치 -8.50% 총임금 -3.14% 설비투자 -2.87%

	(1)	(2)	(3)	(4)
	△총생산성	△부가가치	△총임금	△설비투자
비한계기업=1 _{i,t}	0.088***	0.106***	0.023**	0.023 [*]
한계기업비중 _{j,t-1}	0.322	0.346	0.423***	0.062
비한계기업= $1_{i,t} imes$ 한계기업비중 $_{j,t ext{-}1}$	-0.698***	-0.889***	-0.319***	-0.290 [*]
상장기업=1 _{i,t}	0.032***	0.041***	0.014***	0.007**
부채비율 _{i,t}	0.148***	0.139***	-0.018***	0.011**
매출총이익률 _{i,t}	0.315***	0.397***	0.104***	0.049***
당기순손실=1 _{i,t}	-0.324***	-0.351***	-0.036***	-0.008**
log(업력) _{i,t}	0.039***	0.027***	-0.013***	-0.036***
log(현금전환주기) _{i,t}	-0.034***	-0.043***	-0.010***	-0.002 [*]
상수항 _{i,t}	-0.171***	0.003	0.094***	0.125***
연도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산업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표본수	105,148	105,148	105,148	105,148
R^2	0.114	0.183	0.370	0.009

자료: 이상호 (2020)



자본시장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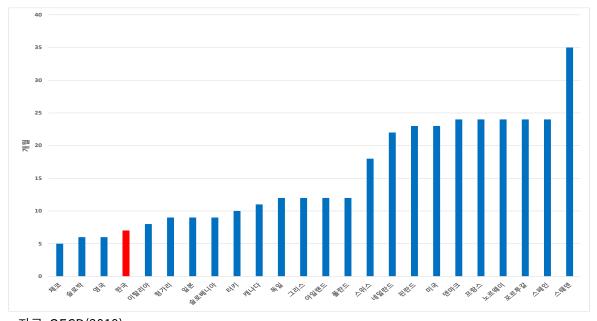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환경 정비: 고용 안전망 강화

- 대규모 실업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업구조조정 지연
 - 대기업의 경우 자체 고용 뿐 아니라 수직 계열화를 통하여 형성된 관계사의 고용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구조조정 지연
 -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로 인하여 해고 발생 시 근로자가 높은 경제적·심리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구조조정에 심각하게 저항
 - 고용이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대두됨에 따라 실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정치적 압력 증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환경 정비: 고용 안전망 강화

- 구조조정 해고자 대상 실업급여/전직훈련 강화로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완화
 - >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을 현재 210일에서 대폭 연장(예: 360일)
 - 업종을 옮겨 재취업하거나 창업을 원하는 노동자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및 훈련 기간 동 안 생계 지원
 - 정부와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고 해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업교육, 취업알선, 생계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 방식 고용전환회사(ETC) 설립 검토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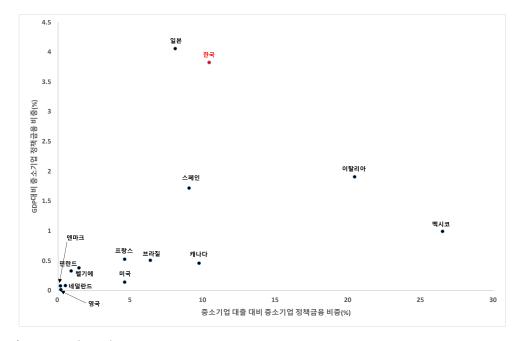


자료: OECD(2019)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환경 정비: 중기 정책자금 축소

-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큰 상황
 - 중소기업 대출의 18%가 정책자금지원(중진공, 신보, 기보, 온랜딩,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
 - 경제규모나 중소기업 대출 시장 규모 대비 정책자금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중소기업정책자금 규모: 2018년



자료: OECD(2019)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환경 정비: 중기 정책자금 축소

- 과도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가 한계기업 퇴출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
 - > 비대칭적 정보 하에서 신용공급 규모가 늘어나면 차입자 집단의 평균 위험 증가
 - > 과다한 규모의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높은 위험을 가진 기업에 대하여 자금 공급
 - > 과도한 금융지원 정책은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 지연이라는 부작용으로 귀결될 개연성
-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
 - 중소기업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중진공 대출 부문, 산은 온랜딩 부문, 신보, 기보, 모태펀드를 자회사로 편입
 - 중소기업정책금융공사에 매년 중소기업 금융지원 총규모 상한을 부여함으로써 정책 자금 규모 축소와 효율성 제고 추진
 - 가장 규모가 큰 정책금융 수단인 보증의 사업방식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예; portfolio 보증)으로 전환

구조조정 제도 정비

- ○워크아웃의 장점이 회생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두 제 도의 병립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 > 워크아웃의 장점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규 자금 공급 가능이 대표적
 - > 담보채권자가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유인부합적이지 못하다는 근본적 문제점 내재
 - 의사결정 지연과 신규자금 공급의 어려움 등 회생절차의 현실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제도 운영 경험의 축적과 자원 투입을 통하여 극복 가능
 - 회생법원의 설립, 신속/간이 절차(fast track, 간이회생, S-track, P-plan, 자율구조조정지원)의 적극적 수용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치

- 효과적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 경쟁력 회복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치 검토
 - › 대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일본의 "산업재생기구" benchmark 가능
 - > 부실채권 정리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목적으로 공공부문이 출자하여 독립적인 주식회사 설립하여 주채권 은행과 공동으로 구조조정 주도
 - 현실적으로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이나 대기 업집단을 대상으로 설정
 - 구조조정기구와 주채권 은행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채권을 매입 하여 채권자 구조 단순화함으로써 신속한 구조조정 촉진
 - > 채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강제: 정부 개입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도 덕적 해이 방지

DIP 금융 활성화

- 회생 절차 활용 제고를 위한 DIP 금융 활성화
 - › 채무자회생법상 DIP 금융의 변제순위 상향 조정
 - > DIP 금융 공급자의 회생절차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하여 DIP 금융 공급에 대한 유인 제고
 - 현재 채무자의 사업양도, 회생계획안 변경, 회생절차 폐지 및 종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DIP 금융 공급자의 의견 제시 권리를 회생절차 전반으로 확대
 - › 정책금융기관이 주요 출자자로 민간과 공동으로 DIP 금융 전용펀드 결성

